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高 灵 杓

〈 目 次 〉

- I. 序 論
- II. 輸出保險制度의 意義
 - 1. 輸出保險制度의 概念
 - 2. 輸出保險制度의 機能
 - 3. 輸出保險制度의 特性
- III.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現況
 - 1. 制度의 沿革
 - 2. 輸出保險制度의 運營概況
 - 1) 運營機構
 - 2) 運營組織
 - 3) 輸出保險의 財源調達
 - 3. 輸出保險制度의 實態
 - 1) 概 況
 - 2) 輸出保險의 種類와 活用實態
 - 3) 信用調査現況
- IV. 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 方案
 - 1. 輸出保險法規体制의 改編
 - 2. 輸出保險基金의 擴充
 - 3. 輸出保險種目의 統廢合
 - 4. 弘報活動의 強化
- V. 結 論

I. 序 論

오늘날 企業은 끊임없이 激動하는 國際環境속에 生産과 販賣를 위하여 合理的 計算으로 利潤獲得을 추구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事態와 錯誤로 因하여 企業經營이 뜻대로 되지 않고 破産까지 招來하는 여러가지 企業危險에 직면하고 있어서 企業의 RISK MANAGEMENT (危險管理政策)¹⁾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特히 輸出企業에 있어서의 RISK MANAGEMENT의 重要性은 國際貿易環境의 急變과 輸出競争의 激化와 더불어 增大되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 世界經濟는 先進國의 高失業率과 멕시코 브라질等 일부 開發途上國들의 外債累增으로 인한 外貨事情의 惡化로 輸入을 強力히 규제함으로써 輸出市場에서의 競争이 熾烈해지고 있으며 世界貿易規模도 절대적으로 위축되어 國際貿易環境은 날이 갈수록 惡化되고 있다. 또한 近來에 新保護貿易主義가

1) 朴壽伊, 國際貿易論, 博英社 1981, p.374.

대두되어 各國의 輸入規制方式도 關稅를 통한 規制보다는 非關稅障壁에 의한 輸入規制를 強化함으로써 우리의 輸出市場을 相對적으로 惡化시키고 있다. 主要 非關稅障壁의 具體적인 例를 살펴보면 VOLUNTARY EXPORT QUOTS (자율적 수출규제) ANTI-DUMPING DUTY 및 TRIGGER PRICE MECHANISM (特別關稅)의 賦課, 自國 産業保護를 위한 緊急輸入制限과 MULTI-FIBRE ARRANGEMENT (다자간 섬유협정) 등이 있으며 이런 新保護貿易主義方式은 美國의 相互交易規制法案 (RECIPROCITY BILLS)으로 進展이 되고 있다.²⁾

이와같은 國際貿易環境의 變化는 輸出競争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競争의 樣相도 변모시켜 지난 날의 價格과 品質競争에서 輸入業者에게 有利한 商品購入條件을 提供해야하는 信用競争(CREDIT GIVING COMPETITION)으로 發展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信用競争은 輸出競争이 熾烈할 수록 그 비중이 絶對 相對적으로 增大되고 있어서 對外競争에서의 輸出企業의 危險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輸出去來도 SELLER'S MARKET方式에서 BUYER'S MARKET方式으로 轉換되어 이루어지는 傾向이며 代金決済條件 역시 L/C BASE 中心에서 脫피하여 延拂條件이 盛行함에 따라 輸出에 따른 危險負擔이 增大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60~70年代에 強力한 輸出드라이브政策에 힘입어 輸出의 急激한 增大, 輸出商品의 高度化, 輸出地域의 多邊化를 이룩하여 輸出이 經濟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資源과 資本이 不足한 韓國은 貿易에서 活路를 찾아야 하는 불가피한 事情으로 因하여 輸出振興을 위한 制度的 補完과 함께 다각적인 政策개발이 絶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輸出主導型經濟開發政策을 強力히 추진함으로써 國民經濟에서의 輸出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며 (表1 參照), 輸出商品構造 역시 70年代 中반 以後 重化學工業政策의 強力한 추진으로 因하여 高度化 되고 있어서 船舶 PLANT 등에 對한 輸出이 急激히 增加하여 1981年度 總輸出額中 重化學製品의 비중이 41.6%에 達해 우리의 輸出商品構造도 점차 先進國型으로 변모하고 있다.(表2 參照). 또한 수출시장도 多邊化되어 1962年度에 33個國에서 1980年以後에는 170여개국으로 擴大됨으로서 일부 共產國家를 除外한 全世界가 우리의 市場이 되고 있다.³⁾ 특히 中남미 아프리카地域 等 開發途上國내지 後진국에 對한 重化學製品輸出이 中長期延拂決済條件에 因하여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輸出이 따른 危險負擔 즉 輸出代金未回收危險負擔이 增大되고 있다. 이러한 國內外的 貿易環境속에서 기대하는 輸出目標을 達成하려면 效果的이고 다각적인 政策開發이 要請되는 바 이를 위한 制度的인 장치가운데 輸出保險制度的 活性化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現行 輸出保險制度가 改善擴充되어 活性化함으로써 輸出者는 적절한 輸

2) JOHN WILLOUGHBY "THE CHANGING ROLE OF PROTECTION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JOURNAL ECONOMICS VOL.6 NO.2 JUNE 1982, pp.195 ~ 211.

3)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82, p.304.

〈表1〉 貿易依存度推移

(單位:百萬弗, %, 經營價格)

	GNP	貿易 依存度	輸 出		輸 入	
			金 額	依 存 度	金 額	依 存 度
1965	3,006	21.2	175	5.8	463	15.4
1970	7,809	36.1	835	10.7	1,984	25.4
1975	19,926	62.0	5,081	25.5	7,274	36.5
1977	34,406	60.6	10,047	29.2	10,811	31.4
1978	45,983	60.2	12,711	27.6	14,972	32.6
1979	60,066	59.0	15,055	25.1	20,339	33.9
1980	57,651	69.1	17,505	30.4	22,297	38.7
1981	63,368	74.7	21,254	33.5	26,131	41.2

資料: 韓國銀行, 關稅廳

〈表2〉 商品性質別輸出推移

(單位:百萬달러, %)

	果 計		食料및直接消費財		原 燃 料		輕 工 業 品		重化學工業品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1970	835.2	100.0	79.7	9.6	66.5	8.0	581.6	69.6	107.1	12.8
1975	5,081.0	100.0	669.9	13.2	223.8	4.4	2,916.0	57.4	1,271.2	25.0
1977	10,046.4	100.0	1,053.8	10.5	371.5	3.7	5,389.5	53.6	3,231.4	32.2
1978	12,710.6	100.0	1,044.0	8.2	329.0	2.6	6,929.1	54.5	4,405.1	34.7
1979	15,055.4	100.0	1,111.6	7.7	357.4	2.4	7,741.9	51.4	5,789.6	38.5
1980	1,504.9	100.0	1,243.8	7.1	349.0	2.0	8,650.3	49.4	7,261.8	41.5
1981	20,992.6	100.0	1,438.8	6.8	457.3	2.2	10,362.3	49.4	8,734.3	41.6
前年度 增加率	21.4		15.7		31.0		19.8		20.3	
年平均 增加率	34.2		30.1		19.2		30.0		49.2	

資料: 韓國貿易協會「貿易動向」

出保險種目を 活用하여 輸出代金決濟上의 不安을 除去할 수 있고 輸出代金未回收危險을 擔保함으로서 輸出金融을 용이하게 지원받아 輸出競爭力을 強化시켜 輸出増大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現況을 考察하고 活性化를 위한 方案을 模索하는데 重點을 두고자 한다.

II. 輸出保險制度의 意義

1. 輸出保險制度의 概念

輸出마케팅에는 어느정도의 RISK를 회피할 수 없다고 하여 危險負擔(RISK-TAKING)을 마케팅의 一機能이라고 하는 것이다.⁴⁾ 輸出은 政治·經濟·法律·관습을 달리하는 外國과의 國際去來이므로 國內去來와는 달리 去來上 많은 危險이 뒤따른다. 이러한 危險들은 첫째, 輸出商品을 輸入業者에게 引渡(DELIVERY)하는 과정에서 發生하는 危險과, 둘째, 輸出商品代金決濟(PAYMENT)에 관한 危險으로 大別할 수가 있다. 前者의 경우는 商品을 運送하는 途中에 船舶의 침몰·火災 등으로 輸出商品의 滅失 또는 훼손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海上保險에서 擔保하고 있으며 後者の 경우는 輸出契約相對方의 契約破棄, 輸入業者의 破産, 輸入國의 戰爭·革命·政策轉換, 國際收支의 惡化, 輸入停止 或은 輸入制限 등으로 輸出을 履行할 수 없거나 또는 輸出代金を 回收할 수 없는 危險을 말하는 것으로서 輸出保險이 이와같은 危險을 擔保하고 있다. 즉 輸出契約을 締結했다고 하더라도 契約相對方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契約成立後 輸入業者가 一方的으로 契約을 破棄하지 않을런지 또는 約定期日內에 代金決濟를 履行할 것인지 또는 輸出契約의 諸事項을 誠實히 遵守할 것인지等 輸出業者는 항상 不安하게되며 輸入國에서의 戰爭·政變·輸入規制 및 換去來制限等の 非常危險은 전혀 豫測이 不可하여 輸出業者 및 融資銀行의 不安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⁵⁾

現代는 不確實性時代라고 表現하는 GALBRAITH의 말⁶⁾처럼 오늘날의 國際情勢는 急變하고 있으며 輸出企業을 둘러싼 貿易環境은 豫測이 不可하여 輸出貿易에 따른 危險負擔을 한층 增大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危險에 대처하기 위한 制度的 保護措置가 要請되어 發達한 것이 保險制度인 바 輸出貿易과 關聯된 保險制度로서 海上保險은 일찌기 14世紀頃부터 地中海를 中心으로 發達한 것에 비해 輸出保險은 第1次大戰以後 즉 20世紀初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保險制度로서 그 歷史가 海上保險에 비하여 매우 짧아 輸出保險은 아직도 生소하게 느끼는 保險制度인 것이다.⁷⁾ 輸出保險(EXPORT CREDIT INSURANCE)이란 貿易去來, 特히 輸出去來에 수반하는 諸危險中에서 海上保險 및 通常의 保險(THE EXISTENT COMMER -

4) 朴壽伊, 國際貿易政策, 博英社, 1979, p.290.

5) 朴大衛, 貿易實務, 法文社, 1981, p.492.

6) J.K.GALBRAITH "THE AGE OF UNCERTAINTY" BOSTON HOUGHTON MIFFIN CO, 1977.

7) 朴大衛, 前掲書, p.491.

CIAL INSURANCE)으로는 擔保될 수 없는 危險, 즉 輸入國의 內亂, 戰爭, 換去來制限等 非常危險(POLITICAL RISK)과 輸入者로부터의 代金回收不能과 輸入者의 破産 또는 支給不能 및 지연 등의 信用危險(CREDIT RISK)과 이밖에 輸出計劃의 豫測錯誤等으로 야기되는 企業危險(CREDIT RISK)⁸⁾ 등으로부터 輸出者, 輸出品生産者, 海外投資者 또는 輸出資金融資機關 등을 保護하여주는 非營利政策保險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즉 非常危險, 信用危險 및 企業危險으로 인하여 輸出者, 製造業者, 金融機關이 입는 損失을 補償하여줌으로서 輸出振興을 도모한 爲한 一種의 政策保險인 것이다.

2. 輸出保險制度의 機能

輸出保險은 그 취지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機能을 갖고있다.⁹⁾

첫째, 輸出에 따른 不安을 除去시켜 준다. 즉 輸出保險은 輸入國에서 發生하는 非常危險 또는 信用危險 등으로 인한 輸出不能 또는 輸出貨物의 代金回收不能으로부터 輸出業者나 生産者가 입는 損失을 補償해줌으로서 輸出貿易에 따른 不安을 解消하여 주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外國貿易去來의 環境條件을 國內去來의 環境條件과 同一한 程度로 有利하게 造成시켜주는 機能을 갖고 있다.

둘째, 信用手段을 提高시켜준다. 즉 輸出保險은 輸出代金の 未回收危險을 擔保함으로 金融機關이 輸出支援金融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며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輸出企業이 補償을 받아 資金面의 流動性이 조속히 회복되어 去來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信用手段이 提高된다.

셋째, 貿易管理制度로서의 機能을 갖고 있다. 즉 輸出保險은 保險의 引受條件, 擔保危險範圍 損失 등에 대하여 補償率, 保險料率 등을 造作함으로서 金融面에서 輸出業者의 活動을 促進할 수도 있고 制限할 수도 있다. 貿易管理政策手段으로서의 貿易去來法과 外換管理法 등에 의한 직접통제방식을 輸出保險과 金融을 關聯시킨 간접통제방식으로 轉換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 輸出保險은 貿易管理制度로서의 機能을 갖는다.

넷째, 輸出振興政策上的 機能을 갖는다. 즉 輸出保險은 政府의 輸出振興政策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輸出業者는 저렴한 保險料의 負擔으로 유리한 實損補償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輸出競争力을 強化시켜 結果적으로 輸出補助의 機能을 갖게 된다.

다섯째, 信用調査機能을 수행한다. 즉 輸出保險業務를 擔當하는 機關은 保險事故를 미연에 防止하기 위해 海外輸入業者의 信用狀態를 調査하는 機能을 수행하기 때문에 輸出保險은 輸出業者들이 必要로 하는 海外輸入業者에 관한 信用情報를 提供하여 준다.

8) 朴壽伊, 國際貿易論, 博英社, 1981, p.378.

9) 李春三·崔鳳赫, 新貿易實務論, 博英社, 1981, p.375.

3. 輸出保險制度의 特性

이와같은 機能을 수행하는 輸出保險은 對外貿易去來가 增大되고 輸出對象國과 輸出商品構造가 多樣化됨에 따라 輸出産業의 輸出競爭力을 강화시켜 輸出振興을 도모하고 輸出産業을 支援育成하기 위해 실시하는 國家政策的 制度의 一種이기 때문에 通常의 保險과는 달리 몇가지 特性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輸出保險은 民營信用保險의 形態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그 理由를 살펴보면, ①保險의 原理라고 하는 大數의 法則을 輸出保險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輸出保險擔保危險의 性質上 保險事故發生의 確率算定이 곤란하여 적절한 保險料의 算定이 어렵고, ②戰爭·貿易 및 換去來의 禁止 또는 制限 등의 非常危險은 다수의 輸出契約에 對하여 保險事故가 同時에 發生함으로 保險經營主体의 莫大한 擔保力の 保障이 되지 않은 限 輸出保險事業을 운영 한다는 것이 어려우며, ③ 保險事故를 事前에 防止하기 위해서는 海外輸入業者에 對한 信用調査와 非常危險에 對한 情勢判斷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調査에는 방대한 調査機能과 莫大한 費用이 요구됨으로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곤란하고, ④ 민간기업으로서의 利潤추구적인 立場에서 선별적인 保險運營이 불가피함으로 輸出保險의 擔保範圍가 不充分하게 될 것이다.

輸出保險의 두번째 特性은 政府의 責任下에 운영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輸出保險의 經營形態는 ① 政府의 直營方式 ② 政府採算에 의한 公企業체의 代行方式 ③ 民間企業에 對한 委任經營方式으로 區別할 수 있으나 民間企業에의 委任經營을 한다고 하더라도 特定危險 (特히 RISK가 큰 非常危險等)에 對해서는 政府가 再保險形式으로 全額을 인수하는 方法等を 取함으로 結果적으로 政府가 責任지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 特性을 든다면 輸出保險의 운영에는 獨立採算制를 採擇하고 있다는 것이다. 輸出保險을 民間企業에 委任, 運營한다고 할지라도 民間企業의 資本金과는 별도의 政府出損基金으로 獨立會計機能을 수행하며 原則적으로 保險事業의 收入으로 支出을 承擔하는 經營方式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¹⁰⁾ 輸出保險은 以上과 같은 概念, 機能 및 特性을 갖고 있어서 輸出企業 및 輸出關聯企業에 對하여 安全하고 有利한 여건을 提供함으로서 積極적인 輸出 MARKETING 活動을 전개하여 海外市場에서의 販賣機會를 포착하고 新市場을 開拓하며 對外競爭에 効率的으로 對處하는 方案을 강구하여 輸出振興 및 對外去來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는데서 意義를 찾을 수가 있겠다.

10) 李春三·崔鳳赫, 前掲書, p.377.

Ⅲ.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現況

1. 制度의 沿革¹¹⁾

輸出保險制度는 國際貿易去來上에 發生되는 危險을 擔保해주는 輸出支援制度로서 強力한 輸出드라이브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必要性이 論議하기 시작한 것은 60年代初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實施된 以後 政府가 輸出第一主義의 政策을 표방하면서 부터이다.

繼續的인 輸出振興을 꾀하기 위해서는 L/C 베이스에 의한 貿易去來以外에 다소 代金回收에 危險이 있는 D/P·D/A 條件 또는 中·長期延拂輸出 等에 關한 과감한 輸出支援을 도모하는 한편 輸出市場도 政治·經濟·社會的으로 다소 不安한 國家에 까지 擴大해야만 할 立場이었다. 政府는 이와같은 積極的인 輸出振興政策을 수행함에 있어서 發生되는 危險으로부터 輸出者를 保護하기 위해 制度的 裝置의 必要性을 느끼고 1968年初부터 輸出保險制度의 實施를 具體化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輸出業界의 主務部署인 商工部가 各界의 意見을 綜合하여 檢討하였으나 輸出保險의 特殊한 性格上 保險業務의 監督을 擔當하고 있는 財務部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을 얻게 되어 輸出保險의 運營主體는 財務部가 되고 實質的인 業務는 國內에서 保險事務를 취급하고 있는 유일한 政府投資企業體인 大韓再保險公社가 代行하기로 經濟長官會議에서 原則的으로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1968年 12月 31日 輸出保險法을 制定하여 法律第2063號로 公布하고 이어서 1969年 1月 22日 輸出保險法施行令(大統領令 第3743號)을, 同年 1月 30日에 輸出保險法施行規則(財務部令 第562號)을 公布함으로써 1969年 2月 18日부터 그 業務를 開始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 輸出어음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및 委託販賣輸出保險의 5個種目을 運營하였으며 그후 1970年 1月 1日 輸出保險法을 1次改正하여 一般輸出保險의 危險擔保範圍를 擴大하였으며 1972年 12月 31日에 다시 同法을 改正하여 海外投資保險制度를 新設하였다. 1976年 12月 31日에 第3次의 法改正을 通하여 海外建設工事保險을 追加하고 輸出保險政府代行機關을 大韓再保險公社에서 韓國輸出入銀行으로 變更하였다.

한편 輸出保險은 輸出을 관장하고 있는 商工部가 輸出振興政策과 關聯하여 運營하는 것이 發

11)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82, p.533에서 발췌.

展的인 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意見이 대두되어 1978年 12月 5日 輸出保險法을 第 4次로 改正하여 輸出保險事業運營主体를 財務部에서 商工部로 이관하였으나 輸出保險最高議決機關인 輸出保險審議會를 韓國輸出入銀行으로부터 商工部に 두게 함으로서 輸出保險에 관한 重要問題를 政府의 政策的 次元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市中銀行의 共同支給保證團이 플랜트 海外建設輸出에 따른 保證書(BOND)를 發給하는 경우 發行銀行의 危險을 擔保하기 위한 輸出保證保險種目を 新設하였다. 또한 輸出保險은 持續的인 輸出增大에 따른 支援을 強化하기 위하여 1981年 3月 27日 立法會議의 議決을 거쳐 第5次 輸出保險法이 改正되었는 바 同內容은 첫째, 急激히 增加하고 있는 保險需要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기 위하여 引受限度의 倍數別(基金의 30倍)를 撤廢하여 總引受限度를 商工部長官이 定하여 國會의 議決을 거쳐 確定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轉貸借款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直接貸出에 따른 元利金回收不能危險을 擔保하는 輸出代金金融保險種目を 新設했으며, 셋째, 輸出保險業務를 보다 効率的으로 수행하고 責任運營體制를 確立하기 위해 同業務를 專擔할 가칭 韓國輸出保險公社의 設立根據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保險者代位權의 明文化 및 輸出信用保證制의 導入根據를 마련함으로써 輸出保險制度의 發展的 運營體制를 確立하는데 큰 進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輸出保險制度는 輸出保險法의 改正과 더불어 發展되어 왔으며 이를 요약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輸出保險法의 改正內容概觀

改正区分	改正日字	改正主要骨子
第1次改正	1970. 1. 1	1. 一般輸出保險의 擔保範圍擴大 2. 輸出金融保險의 保險契約者에 韓國輸出入銀行追加
第2次改正	1972.12.30	1. 海外投資保險制度 新設
第3次改正	1976.12.31	1. 海外建設工事保險制度 新設 2. 輸出保險政府代行機關을 大韓再保險公社에서 韓國輸出入銀行으로 變更
第4次改正	1978.12. 5	1. 再保險制度 實施根據 新設 2. 輸出保險基金에 의한 保險契約締結限度의 倍數를 20倍에서 30倍로 變更 3. 輸出保證保險制度 新設

改正区分	改正日字	改正主要骨子
		4. 輸出保險事業의 管理機關을 財務部에서 商工部로 變更 5. 輸出保險審議會의 設置를 韓國輸出入銀行에서 商工部로 變更 6. 輸出保險基金의 決算上利益金を 基金에 轉入하지 않고 全額 積立하도록 變更
第 5 次改正	1981. 3.27	1. 引受限度 倍數制의 廢止 (總引受限度를 商工部長官이 定하여 國會議決要) 2. 輸出伏金 金融保險種目 新設 3. 保險者 代位權의 明文化 (商法 681 條 ~ 682 條) 4. 韓國輸出保險公事 設立根據 마련 (第 8 章 37 條) 5. 輸出信用保證制의 新設

2. 우리나라 輸出保險의 概況

1) 運營機構

우리나라 輸出保險의 種目は 輸出保險法에 규정하여 各 種目的 保險契約, 保險價額, 保險金額, 補償範圍 및 補償率等을 明記하고 運營하고 있는 바 現在 運營되고 있는 輸出保險의 種類와 擔保危險을 요약해 보면 表 4 와 같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輸出保險은 政府가 직접 관장하고 業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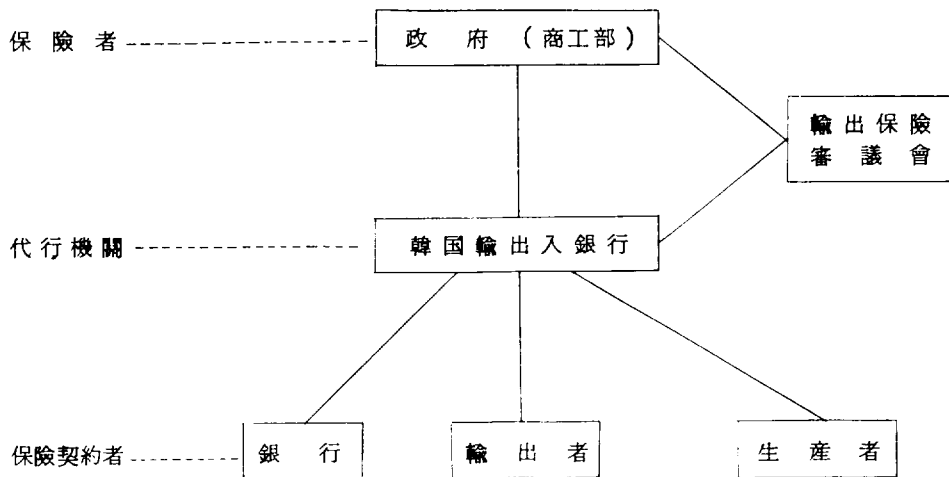
〈表 4〉 輸出保險 運營種目

1982. 8月 現在	
種 目	擔 保 危 險
1. 一般輸出保險	船積前 契約破棄, 輸出不能
2. 輸出金融保險	船積前 融資金에 대한 回收不能
3. 輸出어음保險	D/A, D/P 去來의 代金回收不能
4. 中長期延拂輸出保險	6月 ~ 10年 中 · 長期 延拂輸出에 따른 代金回收不能
5. 委託販賣輸出保險	販賣不振에 따른 代金回收不能
6. 海外投資保險	投資元金回收不能, 果實送金不能
7. 海外建設工事保險	海外建設工事, 用役代金 回收不能
8. 輸出保證保險	BOND發行 外國換銀行의 損失補償
9. 輸出代金金融保險	金融機關의 轉貸借款 및 直接貸出의 回收不能

代행을 韓國輸出入銀行에서 擔當하여 保險事業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輸出保險法의 改正(제 5 차개정 1981. 3.27)으로 韓國輸出保險公社의 設立根據¹²⁾를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公社設立이 지연됨으로서 韓國輸出入銀行에서 代行하는 실정이며 公社設立의 지연으로 그만큼 輸出保險의 活性化에 障礙要因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조속한 公社設立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輸出保險事業을 韓國輸出入銀行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重要事項¹³⁾은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고 施行토록 하고 있어서 韓國輸出入銀行은 정부가 정하는 代行範圍와 代行節次에 따라 業務를 수탁 수행할 따름이며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 保險金의 支給義務는 保險者인 政府가 최종적으로 負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輸出保險에 對한 積極的인 政策開發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輸出保險에 대한 수요증대와 急變하는 國際貿易環境에 適應 위한 다각적인 政策開發을 위해 輸出保險의 專擔機構를 조속히 設立運營되어야 하며 現行 輸出保險運營機構體系는 表 5와 같다.

〈表 5〉 輸出保險運營機構圖



2) 運營組織

輸出保險制度는 一般保險과는 달리 特異한 性格을 띠고 있어서 輸出保險業務 역시 特異한 分野가 있는데 이는 輸出保險이 擔保하고 있는 危險의 特性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輸出保險業務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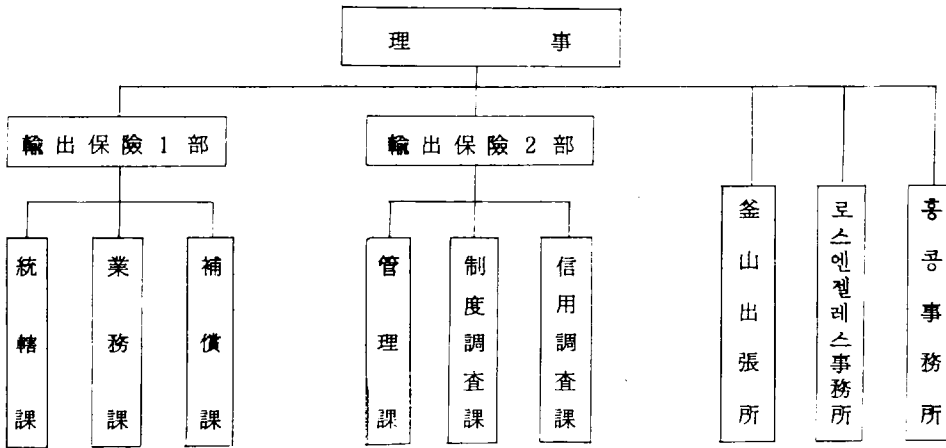
12) 輸出保險法 第 37 條, 參照.

13) 輸出保險法施行令 第 6 條 參照.

區分하여보면 대략 ① 保險契約引受業務, ② 保險事故補償業務, ③ 信用調査業務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特히 信用調査業務는 外國輸入者의 信用調査와 國際情勢動向分析 및 外國COUNTRY RISK調査 등을 包括하고 있어서 輸出保險業務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輸出保險業務를 關장하는 기관이나 職員은 獨立된 專門機關이 되어야 할 것이고 職員은 保險의 知識外에 貿易去來의 過程 및 外換業務의 知識을 터득함과 아울러 經驗習得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떠한 制度이건 制度의 運營組織은 業務의 特性에 따라 編制運營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運營組織을 살펴보면 2部 6個課 1地方出張所 2海外事務所로 組織運營되고 있다(表6 參照).

〈表 6〉 輸出保險代行運營組織 (1981年度)



資料：韓國輸出入銀行

3) 輸出保險의 財源調達

輸出保險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輸出保險基金의 設置를 輸出保險法 第30條에 규정하고 輸出保險의 財源은 基金과 保險料收入으로 充當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保險料의 收入은 輸出保險의 政策保險의 特性으로 인하여 資金調達源으로서의 役割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基金의 造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基金은 政府 또는 政府 以外의 者의 出捐金 및 기타 규정된 財源으로 充當토록 되어 있으며¹⁴⁾

14) 輸出保險法 第31條 參照.

보험금의支給을 위해 必要할 경우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一時借入이 可能하다.¹⁵⁾

1982年 3月末 現在까지 政府가 輸出入銀行에 造成해준 基金은 176 億원이며 79年度 輸出保險法 改正에 의해 別途로 積立케된 利益金이 總126 億에 이르러 現在 基金과 利益積立金を 合한 輸出保險의 總財源은 約 300 億을 示顯하고 있다. 年度別 輸出保險基金의 造成內譯을 보면 表7과 같다.

〈表7〉 年度別 輸出保險基金造成 內譯

(單位:百萬元)

年 度	基金內譯			利益積立金(株)	合 計
	政府출연	利益金轉入(株)	計		
1969	300	—	300		300
1970	200	33	533		533
1971	—	71	604		604
1972	—	130	734		734
1973	—	254	988		988
1974	—	6	994		994
1975	—	194	1,188		1,188
1976	1,000	101	2,289		2,289
1977	2,000	△ 361	3,928		3,928
1978	3,000	212	7,140		7,140
1979	2,500	—	9,640	766	10,406
1980	3,000	—	12,640	2,992(2,226)	15,632
1981	5,000	—	17,640	5,720(2,728)	23,360
1982	—	—	17,640	12,654(6,934)	30,294

註 : 年度別 利益金轉入額 및 利益積立金은 前年度 發生分을 當該年度에 轉入 또는 積立한 數值임.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그러나 輸出保險擔保危險의 特性(POLITICAL RISK 等)을 고려한다면 充分한 基金確保가 요구되며 特히 POLITICAL RISK에 의한 保險事故는 同時多發의인 巨額事故가 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이에 對處할 수 있는 擔保力의 確保는 輸出保險活性化의 核心的 課題라고 할 수가 있다. 즉 輸出保險基金을 充分히 確保해야 保險利用者가 保險者를 信賴하게 되어 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가 促進될 것이다.

15) 輸出保險法 第34條 參照.

3. 輸出保險制度의 實態

1) 概 要

우리나라의 輸出保險制度는 輸出保險法에 根據하여 9個種目を 個別保險引受方式과 包括保險引受方式¹⁶⁾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輸出保險引受實績을 보면 表8과 같다. 輸出保險業務가 開

〈表8〉 年度別 輸出保險引受額 및 保險金 支給實績

(單位:百萬元)

實績 年度	付 保 額			支 給 保 險 金		損 害 率 (%)
	件 數	保險金額	保 險 料	件 數	金 額	
1969	120	1,226	4	—	—	—
1970	252	2,574	11	—	—	—
1971	547	4,429	51	—	—	—
1972	676	11,951	165	—	—	—
1973	357	3,642	83	7	12	15.1
1974	403	5,964	69	2	4	34.7
1975	1,392	16,298	148	18	207	140.3
1976	2,638	47,104	391	13	158	40.3
1977	2,710	50,184	461	25	486	105.4
1978	1,615	66,037	629	40	469	74.7
1979	1,202	259,140	745	30	405	54.4
1980	1,231	491,115	1,933	32	312	16.2
1981	1,527	1,512,440	5,227	17	430	8.2
1982(8)	1,046	712,399	2,846	12	258	9.1
합	15,716	3,184,770	12,754	185	2,772	21.7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始된 初年度에는 契約件數가 120件에 保險金額(付保額) 12億원, 收入된 保險料가 400萬원에 불과하였다. 어떠한 制度이건 導入初期부터 커다란 實績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特히 輸出保險에서 擔保되는 RISK가 수반되는 輸出去來가 頻繁하게 發生하면 輸出者가 自己責任으로 危險을 負擔하면서 輸出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當時 輸出去來는 外換事情이나 政

16) 包括保險引受方式이란 保險契約者가 保險者와 特約을 맺고 特定 商品 및 決濟條件의 輸出全量을 義務的으로 保險에 付保하고 保險者는 自動적으로 保險을 引受하는 方式을 말한다.

情不安이 없는先進國(特히日本,美國,西獨等)을對象으로L/C BASE의決濟條件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輸出保險의利用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推移는74年度까지持續되었으며75年度에 이르러L/C BASE 위주의輸出以外에D/P D/A條件의短期延拂輸出이盛行함에 따라輸出保險引受實績이年平均約130%의成長率을示顯하게 되었으며特히78年以後重化學製品에對한延拂輸出增大와中東地域에對한建設輸出의增加로因하여中·長期延拂輸出保險과海外建設工事保險의引受實績의急激한增加는括目할 만한 것이다. 또한海外建設輸出時에入札,工事履行 및先受金還給 등에 있어서BOND의發給이 불가피하여BOND發給에 따른危險을COVER해주는輸出保證保險이1979年7월에開發施行함으로서輸出保險引受實績이急増하게 되었고 또한包括引受方式을採擇한 것이引受實績의增大를加速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1982年度の引受實績은 다소 부진한樣相을 보이고 있는데8月末現在輸出保險引受實績이7,124億원으로前年同期에比하여28.8%가 감소한 실적인 바 이는對中東建設輸出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收入保險料는 같은 기간중6.9%정도의 감소에 그쳐 대체로例年水準을 유지할 것으로展望된다.

우리나라의輸出保險制度的實態를 살펴볼 때 몇가지種目만利用될 뿐 나머지種目は 사실상 유명무실한狀態이다. 이는 우리의輸出業界에서 대부분輸出保險에對한認識不足과輸出保險의實効性에對한信賴不足으로招來된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輸出保險에對한 재검토와 과감한 운영체제의改編을 통해輸出保險의活性化를期하고輸出支援制度로서의機能強化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2) 輸出保險의 種類와 活用實態

우리나라의輸出保險引受實績概要에 관하여 이미 살펴보았고現在輸出保險法에條文化되어 있는輸出保險의性格과活用實態를韓國輸出入銀行의資料에根據하여種目別로論述하고자 한다.

(1) 一般輸出保險制度

一般輸出保險制度는一般商品을包含하여플랜트 및機械類 등에 관한輸出契約이信用危險 또는非常危險으로因하여파기되거나輸出不能되어輸出者 또는生産者가 입게되는損失 등을補償해 주는保險制度로서 주로船積前의保險事故에 의한損失을擔保해준다.一般輸出保險은1969年輸出保險業務開始以來付保件數는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101件,保險金額은約201億원,保險料는約1.3億원을示顯하고 있으나1980年以後付保實績은 주로船積前의危險을擔保하여 주기 때문에保險事故가發生하였다고 하더라도輸出商品이 남아있어서 실제損失額이 미약하고 또한1969年以來同保險에 의한保險事故의發生이全無한狀態여서輸出業界에서同保險의活用性에 회의를 갖게 되었고同保險에의付保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

〈表 9〉 一般輸出保險 付保實績

(單位:千圓)

区分 年度	付 保 實 績			保 險 金	
	件 數	保 險 金 額	保 險 料	件 數	保 險 金
1969	60	721,560	2,224	—	—
1970	21	533,206	1,245	—	—
1971	7	16,503	79	—	—
1972	1	48,383	155	—	—
1973	—	—	—	—	—
1974	6	791,715	1,940	—	—
1975	—	—	—	—	—
1976	1	1,076,132	2,960	—	—
1977	2	15,362,234	119,636	—	—
1978	2	717,800	4,861	—	—
1979	1	869,400	2,503	—	—
1980	—	—	469	—	—
1981	—	—	—	—	—
1982(8)	—	—	—	—	—
計	101	20,136,933	131,802	—	—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며 이에 대한 同 保險의 改編이 요구되는 것이다.

(2) 輸出金融保險

輸出金融保險은 輸出支援金融을 지원하는 金融機關이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制度로서 金融機關이 輸出業者, 軍納業者, 海外建設業者에게 生産·加工·原資材輸入 등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한 다음 約定된 期日內에 輸出不能으로 因한 融資金 未回收에 의해 發生되는 金融機關의 損失을 補償하여 주는 保險制度이다. 表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80년까지 付保實績은 總 270件에 保險金額은 總 約 76億圓, 收入保險料 約 65百萬圓을 示顯하고 있으나 1981年以來 付保實績이 全無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最近의 付保實績이 감소 내지 全無하는 要因은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 被保險者인 金融機關은 輸出業者 等に 對하여 輸出金融未回收金의 代拂을 強力히 要請하고 있으며 代拂하지 않을 경우 現行 輸出金融体制上 手해받은 輸出業者等은 各種 行政制裁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代拂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에 따라 實際로 保險事故가 發生했다고 하더라도 金融機關의 損失피해 可能性은 極히 稀박하며 現行 輸出金融体制

〈表 10〉 輸出金融保險 付保險實績

(單位：千圓)

区分 年度	付 保 實 績			保 險 金	
	件 數	保險金額	保險料	件 數	保險金
1969	58	491,722	2,306	—	—
1970	81	1,177,110	2,561	—	—
1971	2	18,270	95	—	—
1972	—	—	—	—	—
1973	1	7,200	11	—	—
1974	—	—	—	—	—
1975	1	23,400	209	—	—
1976	5	855,345	12,213	—	—
1977	60	2,171,751	16,971	—	—
1978	17	1,457,981	18,809	—	—
1979	37	1,160,066	10,554	—	—
1980	8	244,680	963	—	—
1981	—	—	—	—	—
1982(8)	—	—	—	—	—
計	270	7,607,525	64,692	—	—

資料：韓國輸出入銀行

가 改編되지 않는 限 向後 同 保險에 對한 保險需要가 계속 저조할 것으로 豫상된다. 따라서 同 保險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現行 輸出金融支援制度上에 輸出保險의 特權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他 輸出保險과의 統廢合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3) 輸出어음保險

輸出어음保險은 D/A, D/P 等 無信用狀方式의 輸出去來에서 發生하는 輸出代金未回收 危險을 擔保하는 輸出保險으로서 輸出業者가 發行한 荷換어음을 國內 外國換銀行이 買入한 後 同어음의 만기에 未決濟됨으로서 야기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制度인바 1982 年度 實績을 表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8月末現在 付保件數 617 件, 保險金額 約 162 億圓으로 81 年度 202 億圓의 約 73%의 付保實績을 나타내고 있으며 收入保險料는 約 1.1 億圓으로서 81 年度 對比 約 74%를 시현하고 保險金支給狀況은 總保險金支給額 約 28 億圓 가운데 同保險의 保險支給金總計는 約 24 億으로 87.5%를 占하고 있어서 現行 輸出保險種目中 가장 損害率이 높은 保險種目이며 1982 年 1月~8月까지 保險金支給額은 約 2.7 億圓中 同保險의 保險金支給額은 85.3%인 約 2.3 億圓을 示顯하고 있다(表 11 參照)

〈表 11〉 輸出어음保險 付保實績

(單位:千圓)

區分 年度	付 保 實 績			保 險 金	
	件 數	保險金額	保險料	件 數	保險金
1969	2	12,129	25	—	—
1970	150	863,568	7,341	—	—
1971	525	4,370,973	50,235	—	—
1972	671	11,487,847	154,522	—	—
1973	356	3,635,031	82,891	7	12,509
1974	397	5,172,273	64,258	1	21,659
1975	1,390	16,072,846	145,001	18	207,429
1976	2,625	40,899,005	329,793	13	157,547
1977	2,642	28,439,841	249,864	24	469,442
1978	1,586	19,545,695	158,275	38	371,248
1979	1,152	16,546,377	126,866	30	361,688
1980	863	17,090,224	137,002	32	286,657
1981	803	22,201,978	155,019	16	309,433
1982(8)	617	16,217,527	111,898	12	229,146
計	13,779	202,546,344	1,772,990	191	2,426,785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4) 委託販賣輸出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은 輸出業者가 委託販賣形式으로 商品을 輸出한 경우 輸出業者가 當初에 販賣될 것으로 예상했던 商品이 예상대로 販賣되지 않아 商品輸出 및 販賣를 위한 支出費用의 未回收로 因한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制度이다.

同保險制度는 表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그 利用實績이 極히 부진하여 1971年과 1972年에 16件的 付保件數에 保險金額도 總 28百萬圓에, 收入保險料 約四拾萬圓에 不過하고 保險金 支給도 1974年度 1件에 約 250萬圓 정도이며 그후에는 付保實績이 全無하다. 이와같은 것은 委託販賣形態의 去來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同保險에 對한 改編이 요청된다.

(5) 中·長期延拂輸出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은 플랜트等 重化學製品의 輸出增大를 위한 輸出保險種目으로 六個月以上 10年 以內의 中·長期延拂輸出을 履行한 후 代金回收不能 또는 輸入者가 債務를 履行하지

〈表 12〉 委託販賣輸出保險 付保實績

(單位:千圓)

年度	付 保 實 績			保 險 金	
	件 數	保 險 金 額	保 險 料	件 數	保 險 金
1969 ~ 1970	—	—	—	—	—
1971	13	23,636	355	—	—
1972	3	4,465	67	—	—
1973	—	—	—	—	—
1974	—	—	—	1	2,475
1975 ~ 1982(8)	—	—	—	—	—
計	16	28,101	422	1	2,475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않음으로서 輸出者가 입게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制度인 바 産業이 高度化됨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同保險은 1978年以後 重化學製品에 對한 延拂輸出이 急激히 伸張되면서 付保實績이 현저히 增加되고 있다. 表 13에서 보는 것처럼 1982年度の 付保實

〈表 13〉 中·長期延拂輸出保險 付保實績

(單位:千圓)

年度	付 保 實 績			保 險 金	
	件 數	保 險 金 額	保 險 料	件 數	保 險 金
1969~1971	—	—	—	—	—
1972	1	419,073	10,789	—	—
1973	—	—	—	—	—
1974	—	—	3,295	—	—
1975	1	201,180	2,717	—	—
1976	5	2,078,121	39,722	—	—
1977	4	3,036,843	60,988	1	16,336
1978	7	31,795,689	288,869	—	98,114
1979	4	29,269,728	485,325	—	43,233
1980	11	50,793,722	578,739	—	25,451
1981	10	71,089,355	1,684,774	1	120,227
1982(8)	15	73,835,556	917,886	—	39,431
計	58	263,419,267	4,073,104	2	342,792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續을 살펴보면 8月末現在 付保件數 15件에 保險金額 約 738億원으로 81年度의 104%를 시현하고 있으며 收入保證料는 約 9億원을 나타내어 前年度 約 17億원의 53%에 불과하여 保險料의 收入이 감소되었다. 支給保險金은 約 39百萬원으로 前年度 約 120百萬보다 67.2%減少되는 추세이지만 同保險은 船舶, 機械類, 産業設費 等 資本財에 對한 中·長期延拂輸出이 계속 擴大되고 있으며 또한 1980年 7月부터 同保險에 對한 包括引受方式이 導入 실시됨에 따라 同保險의 活用可能性이 增大되어 付保實績의 增加趨勢는 持續될 것이며 同保險에 對한 多岐적인 研究와 政策開發이 要望된다.

(6) 海外投資保險

海外投資保險은 海外投資後 非常危險에 의하여 投資元金 回收가 不可하거나 投資에서 發生한 果實을 送金받을 수가 없게되어 投資者가 當하는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制度로서 1982年度 付保實績을 表 14에서 살펴보면 8月末現在 付保件數 3件에 保險金額은 總 407億원으로 前年度實績 總 216億원의 189%를 示顯하고 있으며 收入保證料는 約 210百萬원으로 前年度 約 114

〈表 14〉 海外投資保險 付保實績

(單位：千圓)

區分 年度	付 保 實 績			保 險 金	
	件 數	保險金額	保險料	件 數	保險金
1969 ~ 1975	—	—	—	—	—
1976	2	2,195,576	6,187	—	—
1977	2	1,173,020	13,504	—	—
1978	1	2,434,320	23,102	—	—
1979	5	6,380,929	27,682	—	—
1980	7	7,614,519	36,155	—	—
1981	4	21,560,622	113,566	—	—
1982 (8)	3	40,676,248	210,801	—	—
計	24	82,035,234	430,997	—	—

資料：韓國輸出入銀行

百萬원의 186%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빈약하고 人口가 많기 때문에 資源 確保와 就業機會의 擴大의 必要性으로 因하여 海外投資가 增大될 것이며 特히 우리나라의 經濟 規模가 巨大化됨에 따라 海外資源開發投資의 擴大, 後進국과의 經濟協力の 強化 等으로 海外投資 活動이 活發해지기 때문에 同保險에 對한 수요가 急增될 것이며 이에 對한 政策開發과 함께 基金確保에 特別한 배려가 요청된다.

(7) 海外建設工事保險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促進法에 규정된 海外建設工事나 海外建設用役輸出後 非常危險 또는 信用危險으로 因하여 그 代價를 回收不可하거나 海外建設發注者에 의해 5個月以上 債務履行의 지연으로 若起되는 海外建設業者의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으로서 1981年度에는 海外建設受注가 急激히 增大되어 付保件數가 21件에 保險金額 約 4,452 億원, 收入保險料 約 5 億원을 나타내었으나 1982年度에 들어서는 中東建設景氣의 퇴조로 1982年 8月末現在 付保件數 3件에 保險金額 約 752 億과, 收入保險料 約 2.5 億원을 시현하여 中東建設景氣의 不況이 어느정도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表 15 參照) 그러나 同保險은 아프리카地域 및 아시아地域의 海外建設受

<表 15> 海外建設工事保險 付保實績

(單位:千圓)

年度	付保實績			保險金	
	件數	保險金額	保險料	件數	保險金
1969 ~ 1977	—	—	—	—	—
1978	2	10,085,850	138,802	—	—
1979	3	204,913,589	92,020	—	—
1980	4	82,100,143	239,068	—	—
1981	21	445,164,414	496,114	—	—
1982(8)	3	75,199,165	251,936	—	—
計	33	817,463,161	1,217,940	—	—

資料: 韓國輸出入銀行

注活動의 強化의 必要性이 提高됨에 따라 同保險의 수요가 增大될 것이며 主要 建設市場인 中東國家의 政情不安은 海外建設工事保險의 수요를 促進시킬 것이 確實하기 때문에 이에 對한 대책樹立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8) 輸出保證保險

1980年 7월에 開始된 輸出保證保險은 輸出契約, 海外建設工事契約 또는 海外建設用役契約의 保證條項에 따라 BOND를 發行한 外國換銀行이 海外發注業者로부터 不當한 청구를 받고 야기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制度로서 1982年度 付保實績을 表 16에서 찾아보면 8月末現在 付保件數 408件에 保險金額 約 5,065 億원으로 81年度 實績 約 9,515 億원의 53%를 示顯하고 있으며 收入된 保險料는 約 13.5 億원으로 前年度 約 27.8 億원의 49%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82年度 輸出保險의 總付保實績 8月末現在 約 7,124 億원의 71%를 시현하고 있어서 輸出保

〈表 16〉 輸出保證保險 付保實績

(單位：千圓)

區分 年度	付 保 實 績			保 險 金	
	件 數	保險金額	保險料	件 數	保險金
1980	338	333,538,909	931,524	—	—
1981	689	951,540,246	2,771,282	—	—
1982(8)	408	506,470,639	1,353,597	—	—
計	1,435	1,791,533,594	5,062,403	—	—

資料：韓國輸出入銀行

險種目 가운데 중요한 保險種目으로 부각되고 있다. 同保險은 施行期間이 日淺함에도 불구하고 海外建設 및 用役輸出의 增加와 함께 銀行의 支給保證이 活潑해지기 때문에 保險付保實績이 계속 擴大될 것이 예상된다.

3) 信用調查現況

輸出保險制度에 있어서 信用調查業務는 必須的인 業務로서 그 內容은 海外輸入商社의 個別信用調查와 輸入商社의 公信用力調查 그리고 政治 및 非常危險測定을 위한 外國情勢調查 등으로 區分할 수가 있다. 海外輸入商社에 對한 信用調查方法은 外國信用調查機關의 信用調查利行物, REGISTER BOOK 및 BANKER'S ALAMAC 등의 資料에 의한 信用調查와 CORRESPONDANT BANK 및 海外信用調查機關에 BUYER의 信用調查를 依賴하는 方法을 取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外國의 信用調查機關에 信用調查를 依賴하는 方法을 利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韓國商品을 輸入하는 BUYER가 重化學製品을 輸入하는 BUYER를 除外하고는 中小業者가 大宗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輸出保險을 운영하는 기관은 海外信用調查機關과 提携해야 하는데 이러한 提携機關도 輸出保險創業初期에는 美國의 DUN & BRADSTREET INC社에 불과하였으나 1974年度에 이르러 英國의 AMALGAMATED TRADERS PROTECTION LTD社(ATP), 香港의 ASIAN MERCANTILE AGENCY LTD社(AMA)로 提携機關을 擴大하였고, 1978年以後 每年 提携機關의 擴充이 活潑히 전개되어 1982年 8月末 現在 14個의 海外信用調查機關과 提携하여 世界各國에 散在하여있는 外國의 BUYER에 관한 各種 情報를 入手分析하여 輸出에 따른 危險을 極大化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表 17 參照).

한편 現行 輸出保險業務의 代行機關인 韓國輸出入銀行에서 실시한 信用調查의 對象國과 實績을 表 18에서 살펴보면 1982年 8月末 現在 109個國에 散在하고 있는 10,368個 輸入商社의

〈表 17〉 信用調査 提携実績 現況

(1982. 8. 31 現在)

提携機關名	所在地	信用調査 可能地域	提携日時
1. Dun & Bradstreet International	I World Trade Center Suit 9069 New York N. Y. 100487 U. S. A.	全 世 界 各 国 COMECON 7 個国包含	1969. 2. 25
2. Amalgamated Trades Protections Ltd.	Sellotape House 54/58 High Street Edware Middlesex HA87HW U. K.	世界 154 個国 (敵性国 除外)	1975. 1. 24
3. Asia Mercantile Agency(HK) Ltd.	Room 130-3 Chicao Shang Building 92-104 Queens Road H. K.	13 個国 (東南아시아諸国)	1975. 11. 15
4. Commercial Report Australia Pty Ltd.	Launens House 180 Finders Lane Box 2530 G. P. O. Melbourne Vic. 3001 Australia	大 洋 洲	1978. 1. 3
5. Avetis Johannes	Trade Inquiry Office 51 Khiaban Ramsar Ave. Shareza Tehran 15 Iran	中 東	1978. 1. 30
6. Tokyo Shoko Japan International Co., Ltd.	P. O. Box 1064 Tokyo Central To- kyo, Japan	아 시 아	1978. 1. 30
7. Exim Recoveries Ltd.	Invesment House(Ist.) 21/25 Bro- ad Street C. P. O. Box 8016, Lagos Nigeria	아 프 리 카	1978. 1. 30
8. Ausktnfe Burgel Centrale GmbH	D-57100 Aachen EL Isabethstrabe 14 Postfach 310 W/Germany	유 럽	1978. 1. 30
9. Veritas Argentina	Maipu 286 Buenos Aires Argentina	中 南 美	1979. 1. 15
10. Incredisa(Inform-Credit S. A.)	Inform-Credit, S. A. Lepez 15-309 Y310 Apertado Postal 572 Mexico IDF Mexico	Mexico	1979. 1. 15
11. Tile Research(Private Ltd.)	109-A, Frankel Avenue Singapore 15	Singapore	1979. 1. 15
12. ICAP Hellas S. A.	54A Queen Sophia Avenue, Athens 612 Greece	Greece	1979. 1. 15

提 携 機 関 名	所 在 地	信用調査 可能地域	提携日時
13. KUTZ Corporation	P.O. Box 16522 Bombay-400 026, India	India	1980. 3.27
14. Credit Manag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2300 West Olympic Blvd., L. A. California 90006 U.S.A.	U.S.A.	1982. 1.23

資料：韓國輸出入銀行

〈表 18〉 海外輸入商社 信用調査實績 現況

(1982. 8.31 現在)

地 域 名	国 名	商 社 數	備 考
아 시 아	日 本	353	
	홍 콩	212	
	其 他 28 国	1,894	
유 럽	獨 逸	678	
	英 国	359	
	其 他 18 国	1,631	
아 메 리 카	美 国	2,401	
	카 나 다	305	
	其 他 26 国	1,011	
오 세 아 니 아	오스트레일리아	267	
	뉴질랜드	14	
	其 他 2 国	37	
아 프 리 카	나이지리아	586	
	수 단	46	
	其 他 25 国	574	
計	109 個 国	10,368	国内 682 商社

資料：韓國輸出入銀行

信用狀態를 調査하였으며 年度別 信用調査實績은 1968 ~ 1978 에 海外商社 7,070 個, 國內商社 199 個로 그기간 동안에 모두 7,269 個 商社에 關係 信用調査를 실시하여 年平均 700 여 商社에 關係 信用調査活動의 實績을 보이고 있다. 1982 年度에는 8 月末現在 海外商社 789 個, 國內商社 134 個 TOTAL 923 個 商社에 關係 信用調査實績을 시험하고 있으며, 輸出保險制度가 실시된 후 信用調査商社는 國外商社 10,368 個, 國內商社 682 個 TOTAL 11,050 個 商社의 調査實績을 보이고 있다.(表 19 參照) 國際貿易環境의 急激한 變化와 不確實性이 심화될수록 信

〈表 19〉 年度別 信用調査實績

(單位: 商社數)

年 度	海 外 商 社	國 內 商 社	合 計
68 ~ 78	7,070	199	7,269
79	811	53	864
80	780	220	1,000
81	918	76	994
82. 8.31	789	134	923
合 計	10,368	682	11,050

資料: 韓國輸出銀行

用調査의 重要性은 증대될 것이며 信用調査機關의 機能強化의 必要性이 絶對하다고 하겠다.

IV. 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方案

以上에서 輸出保險制度의 意義와 우리나라輸出保險制度의 現況을 考察하였다. 國際貿易環境이 急變함에 따라 輸出保險의 重要性이 增大되고 있으며 우리의 輸出構造가 急變化됨에 따라 輸出保險의 活性化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現行 輸出保險制度의 問題點과 關聯하여 制度의 活性化를 위한 方案을 提示함으로써 輸出保險의 效率性提高를 통한 輸出振興에 기여하고자 한다.

1. 輸出保險法体系의 改編

우리나라의 輸出保險은 輸出保險法을 根幹으로하여 輸出保險法施行令 施行規則 保險約款으로

法律體系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輸出保險法에 輸出保險에 관한 거의 모든 事項을 條文化함으로써 輸出保險의 活性化를 저해시키고 있다. 즉 現行 輸出保險法은 保險種目,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補償範圍와 補償率等を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保險約款에서 COVER할 수 있는 被保險者의 權利 義務에 관한 事項까지 상세하게 明記함으로써 法律改正의 硬直性이 輸出保險의 운영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政策保險으로서의 機能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輸出保險은 輸出振興을 위한 一種의 輸出支援制度이므로 環境變化에 신속히 適應할 수 있는 機動性을 確保해야 하며 制度의 운영을 彈力的으로 調整할 수 있어야 그 效率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急變하는 國內外 經濟環境에 對處하고 새로운 輸出市場을 積極적으로 擴大하기 위해서는 輸出保險法規의 體制를 改編해야 할 것이다. 輸出保險法에는 輸出保險의 基本骨子만 包括적으로 條文化하고 세부적인 事項은 施行令, 施行規則, 保險約款 등에 규정하여 輸出保險約款을 中心으로 輸出保險을 운영할 수 있도록 法體系를 과감히 整備改編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國際經濟環境變化에 不確實性이 팽배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政策保險의 기동성 確保問題는 輸出保險의 活性化에 매우 중대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2. 輸出保險基金의 擴充

現行 輸出保險은 궁극적으로 政府가 責任을 負擔하는 政策保險이지만 輸出保險事業의 財源은 輸出保險基金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2年 現在 約 300億원을 造成하여 輸出保險事業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輸出保險의 運營基金은 輸出保險에 對한 信賴를 提高시키고 輸出保險擔保危險의 擔保力을 強化시켜 輸出保險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充分히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最近 國際金融市場으로 因하여 우리의 輸出市場이 불투명하고 逆오일쇼크로 인한 中東建設景氣의 침체는 建設工事代金決濟에 對한 不安을 加重시키고 있어서 輸出保險의 운영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OLITICAL RISK인 경우 同時多發적으로 巨額의 保險事故를 유발시킬 可能性이 매우 농후하며 近來에 우리의 海外建設受注額과 延拂輸出契約額이 점차 巨額化함에 따라 輸出保險基金의 擴充은 매우 시급한 課題라고 할 수가 있다. 第2次 石油波動以後 장기간의 景氣침체로 開途國의 外債累積과 國際收支를 惡化시키고 있어서 우리의 輸出環境의 惡化와 함께 代金決濟上의 危險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環境下에서 輸出保險基金을 充分히 確保해야만 輸出者나 銀行이 擔保機關을 信賴하여 輸出保險制度가 積極적으로 活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輸出保險基金은 어느정도 確保해야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對한 어떠한 算術公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輸出保險制度에서 發生될 수 있는 大型事故에 對備하여 補償할

수 있는 財源이면 되겠지만 우리의 輸出規模로 보아 商工部에서는 1986 年度까지 最少限 1,000 億원의 輸出保險基金의 造成計劃을 樹立해 놓고 있으나 最近의 國際貿易環境變化를 주시해볼때 目標年度를 가능한 앞당길 必要가 있으며 이를 위해 基金造成을 하는데 國際貿易協會, 海外建設協會等 輸出有關機關이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도 구상해야 하겠다. 基金의 充分한 擴充은 輸出保險의 信賴性을 提高시켜 保險의 活性化를 促進하며 우리의 輸出競爭力을 強化시켜준다.

3. 輸出保險種目的 統廢合

現行 輸出保險種目は 九個種目으로서 輸出保險法에 條文化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船積前 危險擔保保險으로서는 一般輸出保險과 輸出金融保險이 있고 船積後 危險擔保保險으로는 輸出어음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海外投資保險, 海外建設工事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과 輸出代金融保險이 있으며 輸出保證危險擔保保險은 輸出保證保險이 最近에 開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種目가운데는 貿易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輸出構造의 變化로 因하여 近年에 活用實績이 極히 부족한 種目이 있는가하면 편중적으로 利用되는 種目이 있어서 輸出保險種目的 不합리함을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特히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과 委託販賣輸出保險은 그 實効性的의 미약으로 活用實績이 最近에 全無한 狀態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輸出保險種目を 合理的으로 改編 統廢合할 必要가 있으며 유사하거나 이용실적이 부족한 것은 統合運營하고 새로운 國際貿易環境에 對處하는 保險種目的 開發이 요청된다. 새로운 保險種目的 開發과 關聯하여 提起하고자 하는 것은 中小企業의 輸出支援을 위한 保險種目を 特別히 新設하여 中小企業의 輸出競爭力을 強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輸出保險의 効率性을 提高시키고 活成化를 促進하기 위해서는 保險種目は 輸出保險을 利用하는 契約者가 活用하기에 편리하고 事故發生時 有利한 立場에서 補償받을 수 있도록 編制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輸出保險種目的 統廢合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前提로서 輸出保險法規의 體系가 개편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輸出保險의 活性化는 輸出保險利用者의 편에서 保險運營體系가 樹立될 때 加速化될 것이다.

4. 弘報活動의 強化

輸出保險은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保險制度이며 一般商業保險이 아닌 政策保險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 하였다.

따라서 輸出保險制度를 活用해야하는 輸出者, 輸出商品生産者, 銀行, 海外投資者, 海外建設業者 등이 輸出保險의 效率性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여 輸出保險의 活性化를 期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輸出保險이 政策保險이라고 할지라도 上記 利用者들이 입게되는 損失을 擔保하기 위해서는 어떤 輸出保險種目を 活用하면 되는지 여부를 平素에 주지시킬 必要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輸出保險을 관장하는 政府當局과 輸出保險을 운영하는 機關으로서는 保險契約者가 되는 輸出者나 銀行에 널리 弘報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勿論 輸出保險事業은 非營利 保險이기 때문에 一般商企業과 같은 莫大한 廣告宣傳費를 投入하는 商業的 廣告는 不必要하지만 우리의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라는 側面에서 輸出保險의 重要性을 널리 弘報하여야 할 것이다.

現行 輸出保險當局의 弘報活動의 方法은 官報, 告示, 制度說明會開催, 세미나, 팸플릿 및 用語集發刊 등을 利用하고 있지만 輸出保險의 沿革이 15年이 되고 있지만 業易의 認識이 미흡한 것이 오늘의 現實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輸出保險에 관한 弘報活動이 더욱 強化되어야 하며 現行의 方法을 더욱 발전강화하고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媒体弘報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輸出保險制度를 理解하지 못하는 輸出商社나 銀行이 쉽게 制度의 內容과 活用方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떠한 制度이건 弘報活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經費와 專門要員의 動員이 必要로 하는 것이지만 輸出保險의 效率的인 弘報活動을 위해서는 制度說明會, 세미나, 輸出保險關係刊行物の 發刊, 廣告, 宣傳을 위한 專擔部署가 설치 되어야 하겠다. 弘報活動의 專擔部署가 設置運營됨으로서 輸出保險의 活性化를 조속히 實現하여 輸出産業의 競爭力 確保에 輸出保險이 一助를 하게 되어 輸出支援制度로서 그 役割을 다하게 될 것이다.

V. 結 論

賦存資源이 빈약하고 人口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對外指向的 經濟開發戰略은 불가피한 것이며 輸出振興을 위한 諸般政策構想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國際貿易環境이 急變하고 世界輸出市場에서의 競爭이 激化되면서 競爭의 樣相이 날로 變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經濟規模가 高度化되고 우리의 技術蓄積이 向上됨에 따라 海外投資와 技術用役輸出이 增加되고 資源確保를 위한 海外資源輸入 急増할 것이 예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輸出商品構造도 輕工業製品 中心에서 重化學製品 中心으로 變化되고 輸出市場도 과거의 先進國 爲主의 市場構造에서 탈피하여 中동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後進국내지 開途國으로 多邊化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國內外的인 經濟環境속에서 輸出企業이 繼續企業으로서 經營活動을 營爲하는데 따

르는 危險負擔이 增加되고 있다. 즉 輸出競爭의 激化로 인한 輸出去來條件의 相對的 不利와 重工業製品에 對한 延拂輸出去來條件의 盛行 및 期間의 長期化, 國際金融市場의 不安으로 인한 國際流動性的 不足 등은 輸出에 따른 危險負擔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對한 制度的 補完장치로 輸出保險制度的 發展과 活性化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企業, 特히 輸出產業은 輸出保險制度的 活用如何에 따라 經營成果가 현저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輸出에 따른 危險을 極少化시키기 위해서는 輸出保險制度를 積極的으로 活用해야하며 輸出業界에서는 輸出保險의 活用없이는 지속적인 輸出振興이 어렵다는 現實을 직시하여 輸出保險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하고 輸出保險運營機關은 短見的인 思考에서 벗어나 急變하는 國際貿易環境에 적극적으로 對處할 수 있도록 輸出保險의 制度改善과 運營体制의 確立이 要望되며 가칭 韓國輸出保險公社가 조속히 設立되도록 과감한 政策的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輸出保險制度가 活性化되면은 輸出市場의 擴大와 輸出增大가 加速化될 것이며 輸出業界의 輸出採算性도 向上과 國際競爭力이 強化될 것인바 이는 輸出業者가 輸出 MARKETING 活動을 보다 적극적으로 展開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輸出保險制度的 活性化를 위한 方案을 概略의이지만 提示한 것이며 이의 實現을 위한 不斷한 研究과 努力이 要望된다고 하겠다. 勿論 貿易環境에 對한 觀點에 따라 活性化方案이 달리 摸索될 수도 있음을 添言하고자 하며 輸出保險制度的 效率성을 提高시키기 위해 政府學界 및 輸出業界의 유기적인 協力이 要望된다. 앞으로 輸出保險의 수요증대와 關心高潮에 부응하여 本稿가 輸出保險制度的 發展에 기여하길 바라며 結論을 맺고자 한다.

— Summary —

A Study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n Korea

By Kyung Pyo Koh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study the recent situation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n Korea and to seek the proposal for enhancing the use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to promote the export of this country in future.

As one of the export supportable system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s called the nonprofit policy-insurance system covering such risks as the political risk, the credit risk and the business risk, etc., which are unable to be covered by the existent commercial insurance. In Korea, the Export Credit Insurance has been enforced from the early of 1969 on the basis of Export Credit Insurance Act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1968, and also it has helped the country further promote its export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the recent information of foreign trade, there is a big change in the domestic and foreign trade environment, which has steadily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 continuous export promotion in Korea.

Therefor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hould be revise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its best use to strengthen our international marketing power under the recent trade circumstance.

So I propose that the following proposal should be realized for enhancing the best use of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s soon as possible,

1. The existent Export Credit Insurance Act should be reorganized without delay.
2. The amount of the existent export credit insurance fund should be increased.
3. The items of Export Credit Insurance should be reorganized and developed.
4. The publicity activities for the Export Credit Insurance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o the above proposal, the so-called "the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f the above would be totally realized, the Export Credit Insurance will be activated and will contributed to the export promotion in Korea.